12 · 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13 발의연월일: 2025. 2. 28.

발 의 자:이수진・위성곤・서미화

정준호 • 권향엽 • 문금주

추미애 · 김정호 · 박홍근

전종덕 • 한정애 • 송옥주

김성환 · 정태호 · 전진숙

박홍배 • 김남근 • 김종민

이건태 · 김준혁 · 김 윤

서영석 • 백승아 • 김동아

안태준 · 소병훈 · 김문수

의원(27인)

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하 "12·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많은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피해자와 유가족은 물론 전 국민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긴 참사임.

대형참사인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부상자와 유가족 등이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매우 큰바,이들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피해구제 및 지원 정책이 절실히 필요함.

그런데 현행의 법제도는 12·29여객기참사의 피해를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다양한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이번 참사의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하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담은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함.

이에 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담은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고 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12·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 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피해자의 권리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차별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생활지원·의료지원·심리치료지원·돌봄지원·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등으로 규정함(안 제3조).
-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모욕·개인정보 유출 등 2차 가해행위 방지 대책의수립·시행,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예산상의 조치 등을 부여함(안

제4조).

- 라.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와 피해지역 지원사업 및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지원단을 두며,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운영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바. 희생자가 15세 미만인 이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수혜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상법」 제732조에 따라 가입이 제외된 경우 국가가 특별지원금의 지급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2조).
-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 및 조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 도록 하고, 피해자가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이 악화된 경우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아.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여객기참 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치유휴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고용 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자.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따라 각각 긴급복지,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안 제19 조).
- 차. 추모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및 유가족의 자조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가족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각각 국가의 출연 및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안 제27조 및 제28조).
- 카. 국회, 지원·추모위원회 및 유가족협의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조직으로부터 12·29 여객기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지원 상황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 타. 국회가 사고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항공·철도사고조사단의 사고조사관의 추가 위촉 및 임명을 각각 2인 이내의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법률 제 호

12 · 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12·29여객기참사"란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제주항공여객기가 활주로 외벽에 충돌 하며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 2. "희생자"란 12·29여객기참사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2·29여객기참사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 나.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직 계존비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 4. "피해지역"이란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말한다.
- 5. "유가족단체"란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12 \cdot 29$ 여객기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12·29여객기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 2.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차별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 3.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4.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 5. 생활지원·의료지원·심리치료지원·돌봄지원·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 6. 추모사업·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 하는 등 참여할 권리
 - 7.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 8.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 자의 권리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가해행위(이하 "2차 가해행위"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 요한 정보의 제공 및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은 12·29여객기참사와 관련된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지원 • 추모위원회 등

- 제6조(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원·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생활지원금·심리상담·교육비 등 지원, 공동체 회복 지원, 교육 환경 개선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 2.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 3. 제27조에 따른 재단 및 제28조에 따른 유가족협의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원·추모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유가족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 ⑤ 지원·추모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지원·추모위원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 ⑦ 지원·추모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지원조직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등)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추모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의 구성·운영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자문단의 운영) ① 피해자 및 유가족단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기구(이하 "자문단"이라 한다)를 둘수있다.
 - ② 자문단은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진상 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 1. 국회가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전문가
 - 2. 제28조에 따른 유가족협의회가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전문가
 - ③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의 자문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추모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피해구제 및 지원

제9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 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국가등은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피해자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 ②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2조(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수혜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상법」 제732조에 따라 가입이 제외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의 지급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특별지원금은 15세 미만 희생자가 제1항에 따른 단체보험에 대하여 가입이 제외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급의 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 구조·복구·치료· 수습 및 조사 등에 참여한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① 국가는 피해자 가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일상생활돌봄 지원) 국가는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1.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 2. 건강과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식사 지원 서비스
 - 3. 그 밖에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 제16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치유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 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 등) ① 국가등은 12·29여객기참사의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금·수 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12 \cdot 29$ 여객기참사 당시 피해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또는 초·중·고등학생이었던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학정원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19조(「긴급복지지원법」・「아이돌봄 지원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 ②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 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 ③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모두 사망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국가등은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대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기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 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공동체 회복 지원

- 제22조(특별지원방안의 시행) ① 국가는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피해지역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특별지원방안에는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영업활동의 제한 등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

- 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1. 국적·인종·종교·성별·나이·직업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 민의 특성
- 2.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 3. 피해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진흥,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
- 4. 건강·복지·교육·문화·체육 등 피해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제24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교육·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 및 유가족단체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장 추모사업 등

- 제25조(추모사업 등 시행) ① 국가등은 12·29여객기참사 희생자들의 추모 및 재난 및 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1. 추모공원 조성
 - 2. 추모기념관 건립
 - 3.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 연구
 - 4. 추모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교육과 이에 관한 각 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 5. 추모비 건립
 - 6. 추모행사 개최
 - 7. 그 밖의 관련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①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재단 출연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12·2 9여객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재난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1. 추모시설의 운영 · 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 2.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 3.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국가등은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등 추모사업을 제1항의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8조(유가족협의회의 설립·운영 등) ① 유가족은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의 자조활동 및 재난사고 재발방지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가족단체(이하 "유가족협의회"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등은 유가족협의회(「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 인으로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사단법

인을 말한다)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범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사무공간 및 사무인력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시설·장비 등의 지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장 상황보고 등

- 제29조(진상조사 및 피해지원 상황보고 등) ① 국회, 지원·추모위원 회 및 유가족협의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 관계지방자치단체 및 그밖의 관계 행정기관·조직(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12·29여 객기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국회, 지원·추모위원회 및 유가족협의회는 진상조사 및 피해지원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30조(사고조사위원회 및 사고조사단 구성에 대한 특례) ① 국회는 1 2·29여객기참사에 대한 사고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 2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

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단(이하 "사고조사단"이라 한다)의 사고조사관을 각각 2인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위촉·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임명을 요청받은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즉시 위촉·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임명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과 사고조사관의 업무의 범위는 12·29여객기참사의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7장 보칙

제31조(비밀준수 의무) 지원·추모위원회 및 지원단(이하 "지원·추모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원이었던 사람, 지원·추모위원회등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인, 자문단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사람은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2차 가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12·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하여 2차 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3조(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지원·추모위원회등의 위원· 직원 또는 자문단의 구성원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35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생활지원금등 금전 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2.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기간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징수한다.
- 제36조(12·29여객기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① 국가등은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12·29여객기참사와 관련하여 수 집하고 보존하는 기록물(이하 "12·29여객기참사 관련 기록물"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하며, 12·29여객기참사 관련 기록물의 사본을

추모기념관에 제공하여 추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피해자는 12·29여객기참사의 진상조사와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12·29여객기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가 해당 12·29여객기참사 관련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열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피해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지원·추모위원회 등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 제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및 자료 제

출을 한 사람

- 2. 제32조를 위반하여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행위를 한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1조를 위반하여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지원·추모위원회등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추모위원회등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 하여 지원·추모위원회등의 권한을 행사한 자
- 3.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
- ③ 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지원·추모위원회등의 위원 및 직원의 위촉·임명, 자문단의 위원 위촉,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지원 · 추모위원회의 규칙의 제정·공포, 유가족협의회의 설립준비는 이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